

## 광명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

제정	1996. 12. 11	규칙	제674호
개정	1998. 2. 25	규칙	제703호
	1998. 9. 23	규칙	제722호(직제규칙)
	1999. 3. 5	규칙	제741호
	2003. 11. 18	규칙	제826호
	2006. 5. 22	규칙	제881호
	2008. 6. 16	규칙	제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일부개정	2015. 12. 11	규칙	제1120호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일부개정	2017. 4. 14	규칙	제1150호
일부개정	2018. 7. 31	규칙	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건축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 5. 22, 2008. 6. 16>

###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

제2조 삭제 <2017. 4. 14>

제3조(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98. 2. 25, 2006. 5. 22, 2017. 4. 14>

1. 지질조사 결과에 의거 지하층 설치시 인근의 피해우려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건축 관계자가 판단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설치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
- 1의2. 도시계획도로개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
2. 삭제 <2003. 11. 18>
3. 경미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

-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,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부기가 있는 날 또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당해 심의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제5항·제8항·제9항·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소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심의분야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⑥ 위원회 개최 중 위임된 개별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차회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소위원회는 심의서(별지 제1호 서식) 작성과 동시에 해산된다.

### 제3장 건축사등의 업무대행 수수료 등

- 제4조(수수료의 지급시기 등) ①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동 민원서류의 처리 후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매분기마다 제출하는 수수료의 청구(별지 제2호 서식)에 의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6. 5. 22, 2017. 4. 14>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재무회계 규칙」(이하 “회계규칙”이라 한다)에 의한다. <개정 2006. 5. 22>
- 제5조(담당자 확인)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.

### 제4장 건축지도원의 복무

- 제6조(건축지도원의 지정)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(이하 “지도원”이라 한다)을 30인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4.

14, 2018. 7. 31>

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6. 5. 22>

제7조(지도원의 임기)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원의 지정해제)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5. 22>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
2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
3.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
4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
5. 「건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
6.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자

제9조(지도원의 복무)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·확인·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22>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본인이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0조 삭제 <2017. 4. 14>

## 제5장 (제11조 내지 제16조) 삭제 <99. 3. 5>

제11조 삭제 <99. 3. 5>

제12조 삭제 <99. 3. 5>

제13조 삭제 <99. 3. 5>

제14조 삭제 <99. 3. 5>

제15조 삭제 <99. 3. 5>

제16조 삭제 <99. 3. 5>

제6장 및 제7장 (제17조 내지 제20조) 삭제 <98. 5. 25>

제17조 삭제 <98. 5. 25>

제18조 삭제 <98. 5. 25>

제19조 삭제 <98. 5. 25>

제20조 삭제 <98. 5. 25>

제8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

제21조 삭제 <2006. 5. 22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1998. 2. 25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1998. 9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1999. 3. 5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식수예탁

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2003. 11. 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5. 22 규칙 제881호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2. 11 규칙 제1120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

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4. 14 규칙 제115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5. 12. 11>

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

건축주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설계자	성명		면허번호	
	주소			
업무대행건축사	성명		면허번호	
	주소			
업무대행기간				
업무대행내용				
대지위치				
규모	층수	지상(층), 지하(층)	연면적	m <sup>2</sup>
수수료산출근거				
청구금액				

「광명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: 서명 또는 날인

광명시장 귀하

- 첨부 : 1. 건축허가서(공사감리 <중간> 보고서, 사용승인서) 사본 1부  
 2. 현장조사서 및 감리보고서 1부. 끝.